

아주대학교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

- 1장 총칙
- 2장 선거관리위원회
- 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4장 선거
- 5장 선거운동본부
- 6장 투표
- 7장 개표절차
- 8장 당선자 결정과 공고
- 9장 재투표 및 재선거
- 10장 보궐선거
- 11장 징계
- 12장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강의 실시'상황에서 아주대학교(이하 본교)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본교 총학생회(이하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반 학생회 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과대학, 학과, 반 학생회의 선거 집행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 및 관리한다.

제4조(원칙)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지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선거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 ② 중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총학생회칙과 학생회 선거 규약 및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 ③ 단과대학, 학과 및 반 학생회 선거 집행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을 공포함에 따라 2020년도 2학기 선거는 중선관위가 총괄한다.)

제6조(역할)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① 총학생회 선거 및 유관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② 총학생회칙과 학생회 선거 규약 및 본 세칙을 구체적인 시점에서 보완한다.
- ③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 ④ 본 세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사법 기능을 한다.

제7조(구성)

- ①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조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 ②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및 유고 시 위임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 피위임 자격은 반 학생회장 이상의 직선간부로 한다.
- ⑤ 사무국은 중선관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선거 제반 업무를 보조하며 중선관위에서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

- ① 중선관위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총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위임받는다.
- ③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부재 시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제9조(구성시기)

선거 공고 전까지 중선관위를 구성한다.

제10조(업무 및 권한)

- ① 입후보자 자격심사
- ② 선거인 명부작성
- ③ 선거관리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④ 선거 제반 홍보물 적법 판정
- ⑤ 규정에 벗어난 제반 홍보물에 대한 철거 및 압수
- ⑥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 일정 조정
- ⑦ 선거장 질서유지 및 감독
- ⑧ 재투표, 재선거, 보궐선거 여부 결정
- ⑨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 확정
- ⑩ 선거관리에 필요한 보조요원 선발
- ⑪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
- ⑫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⑬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의 공간 지정 (단, 선본과의 룰미팅 시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 ⑭ 선거사법기관으로서 선거에 관한 사법행위를 총괄한다.
 1. 총학생회 선거 전반의 유권해석
 2. 선본에 대한 권고 및 징계
 3. 이의제기의 처리
- ⑮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응해 단과대 선거를 지원한다.
 1. 단과대 선관위에서 조정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2. 중선관위에서 선거 관리의 원칙을 공유하고 선거 실무를 조율한다.
 3. 단과대 선관위는 단과대 학생회 회칙이나 선거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중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조정이 요청된 경우 중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과대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⑩ 아래와 같은 선전물에 대해서 선관위는 필히 사전 확인 후 소견을 전달한다.

1. 후보 포스터
2. 정책 자료집
3. 대자보
4. 리플릿
5. 온라인 홍보물

위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선거운동도구에 대해서는 중선관위가 판단하여 사전 확인 후 소견을 전달한다.

제11조(소집 및 개최)

-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및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2조(위원불신임의 의결)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인원 1/4 이상의 발의와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임한다.

제13조(의결)

- ① 일반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0조 4, 5, 8, 9, 12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 시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해산)

중선관위는 당선자 확정 공고 후 24시간 이후 즉시 해산한다.

제2절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구성)

- ①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대 선관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연 선관위)의 구성은 각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② 단대 및 동연 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단위 중선관위원이 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단대 및 동연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 소속 학과, 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진행, 관리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7조(선거권)

- ①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 ② 휴학생, 재직자 전형 학부생, 교환학생의 경우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다.
- ③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 투표율에 반영된다.

제18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 해당사항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한다.

- ①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총학생회 정·부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4학기 이상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로 유권자 4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각 단과대학, 학과, 반 학생회 정·부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4학기 이상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로 해당 단위 유권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단위별 회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④ 누계평점 2.0 이상인 자.
- ⑤ 교내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⑥ 직선제 대표자를 추천 및 등록 기간 이전에 사퇴한 자.
- ⑦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받아 선거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자.

제2절 후보자 등록

제19조(등록)

후보자 등록 희망자는 2인 1조로 하여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 시까지 중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서류)

- ① 후보자 등록을 하는 자는 중선관위에서 교부한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선관위 대표 메일(2020ajovote@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원서
 - 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관위 소정 양식) 1부
 - 나. 약력 및 입후보 소견서 (선관위 소정 양식) 1부
 - 다. 선거규약 이행 및 공정선거 서약서 (선관위 소정 양식) 1부
 - 라. 재학증명서 각 1부
 - 마. 성적증명서 각 1부
 2. 후보추대위원회 명단
 - 가. 중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맞게 후보추대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최초 후보추대위원회 명단 제출 이후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명단을 재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수정된 명단은 중선관위가 승인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3. 추천인 연서

가. 추천인 연서는 중선관위에서 제작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나. 추천인 연서는 후보자 등록 희망자 및 후보추대위원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 후보추대위원회는 중선관위가 명단을 승인한 시점부터 배포할 수 있다.)

다. 추천인 연서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 1:1 채팅방 등을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입후보자 심사)

- ① 중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제18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반하는 입후보자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추천인 연서는 해당 학기 재학생이 작성한 것만을 인정하며, 하나의 후보추대위원회에 대한 중복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선관위는 그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1. 추천인 연서에 명의를 도용한 또는 조작한 경우
 2. 제20조의 서류를 1개 이상 대필한 경우
 3. 제27조의 규정을 4회 위반한 경우
- ④ 그 외의 위반행위의 경우,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중선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또는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제22조(선거일)

- 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 개표로 구성되는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중선관위가 정한다.
 1. 추천 및 등록 기간: 일정 공고 이후 10일 이내
 2. 선거운동 기간: 등록 기간 이후부터 2주 이내
 3. 투표: 선거운동 기간 다음날부터 3일 내외
 4. 개표: 투표 종료 직후 반, 학과, 단과대, 총학생회 순으로 진행한다.
- ② 중선관위에 의해 결정되었던 선거 일정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③ 연장 투표, 재투표의 여부 및 일정은 중선관위가 정한다.

제2절 선거운동

제23조(정의)

- ①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 ②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원칙)

본회의 선거 시행세칙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한다.

제25조(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중선관위에 의해 결정된 선거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26조(선거운동 제반사항)

- ① 온라인 선거운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중선관위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의 최초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후보추대위원회 명단을 받는 행위는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거운동 기간은 제25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⑤ 투표당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문구만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있으며, 선본을 지칭하는 문구 등의 게시, 배포를 금지한다.
- ⑥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전 선거운동은 금하며, 공개적인 사전 준비행위를 할 경우 자신의 학과(부), 학번 및 성명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

제27조(선거운동 금지사항)

모든 입후보 및 선본은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따른다.

- ① 선거운동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단, 중선관위가 지정한 세부 지침에 의해서 모의투표나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단, 유권자의 정책 제시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선전물은 가능하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 ③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 등 기타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 ⑤ 선거를 빙자한 어떠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 ⑥ 기타 선거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⑦ 중선관위원 및 단대 선관위원,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해당 단과대학 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8조(사전 선거운동)

- 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날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후보자 추천, 설문 조사, 후보자 추대모임, 후보추대위원회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단, 설문 조사는 중선관위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한다.)

제3절 선거 독려

제29조(정의)

선거 독려란 공명선거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선분을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이다.

제30조(원칙)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선거 독려 제반사항)

- ①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중선관위 및 단대선관위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후보자 및 선분을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제32조(선거 독려 금지사항)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제4절 선거선전물

제33조(선전물의 검인)

- ①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선전물은 중선관위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선전물을 반드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후보 포스터
 2. 정책 자료집
 3. 대자보
 4. 리플릿
 5. 온라인 홍보물

제34조(선전물의 통제)

- ① 중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선전물의 종, 수, 크기, 부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게시 장소는 중선관위가 지정한 곳으로 한한다.
- ② 당선자 및 후보자는 당선자 공고일 이후 72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로 모든 오프라인 선전물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35조(선전물 제반사항)

- ① 모든 선전물은 중선관위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중선관위에서 제작한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훼손할 시에는 징계 조치한다.
- ② 모든 선전물은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위치에 게시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을 따른다.
- ③ 선전물에 대한 규제는 중선관위에서 일괄 진행한다.
- ④ 모든 온라인 선전물은 중선관위가 사전 승인한 후보자 및 선본의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만 게시할 수 있다.
- ⑤ 후보자와 선본원의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선전은 중선관위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⑥ 선전물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들어갈 수 없다.

제5장 선거운동본부

제1절 후보추대위원회

제36조(목적)

각 단위 학생회 후보자 등록 희망자를 추대하는 단체로, 공명정대하게 학생 대표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7조(역할)

- ① 추천인 연서 배포에 있어, 후보자 등록 희망자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중선관위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후보자 등록 희망자의 선거 준비 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단,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38조(등록)

- ① 중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맞게 입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추대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최초 후보추대위원회 명단 제출 이후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명단을 재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된 명단은 중선관위가 승인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 ③ 선관위는 후보추대위원회원으로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관리하며, 특정 인물의 후보추대위원회원 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명단에 의거하여 답변한다.
- ④ 이미 다른 후보추대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을 중복 신고하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후보추대위원회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후보추대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 또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39조(구성)

- ① 후보등록 전까지는 후보추대위원회로 한다.
- ② 등록 후부터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필요 시 중선관위 허가 하에 합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0조(선본원 등록)

- ①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각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학과, 사진(사진의 양식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얼굴이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선본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하며,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최초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선관위에서 논의 후 결정된 창구에 등재하고, 중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 ③ 선본원 추가 등록의 경우 상시 가능하며, 결정된 창구에 등재하고 중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 ④ 제출된 변동 사항은 선관위원장이 이를 접수했음을 확인한 즉시 유효하다.
- ⑤ 선관위는 선본원으로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관리하며, 특정 인물의 선본원 자격 유무에 대한 타 선본 또는 회원의 질의가 있을 경우 명단에 의거하여 답변한다.
- ⑥ 이미 다른 선본에 포함된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투표

제1절 투표 공고 및 투표시간

제41조(투표방법 공고)

중선관위는 투표 시작 5일 전까지 투표의 종류, 방법, 내용들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투표시간)

- ① 투표는 3일간 진행한다.
- ② 투표 종결 시점에서 투표율이 35% 초과 50% 미만일 때, 아래 각 호로 인하여 투표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 중선관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중선관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관위의 과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 중선관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중선관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투표 기간을 2일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모바일 또는 전자 투표의 업체의 과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절 투표절차

제43조(온라인 투표절차준비)

- ① 중선거관위는 선거 시작 시에 투표 참여 링크를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SNS에 게시한다.

제44조(온라인 투표 투표절차)

- ① 선거인은 선거 사이트에 접속한다.
- ②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 준수사항 동의 후 화면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 ③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자의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중선거관위 및 투표참관인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 ④ 그 외에 투표과정에 있어 중선거관위 및 투표참관인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자의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중선거관위 및 투표참관인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제7장 개표절차

제1절 개표관리 및 절차

제45조(개표시간)

개표는 투표 종료일 투표 종료 후 실시한다.

제46조(개표절차)

- ① 중선거관위 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인수를 공개한다.
- ② 개표시 중선거관위 위원장의 개표키 입력 시 투표결과가 공개된다.

제47조(개표관리)

- ① 개표사무는 제7조 1, 5항에 의거하여 사무국이 담당한다.
- ② 개표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중선거관위 위원장으로 한다.

제2절 이의제기

제48조(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중선거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중선거관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당선자 결정과 공고

제49조(당선자 결정)

전체 유권자(4학년인 경우 투표한 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전체 유권자(4학년인 경우 투표한 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 ① 다음 학과의 명시한 학년의 경우, 투표한 자만 유권자 수에 포함시킨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5학년
 2. 약학대학 6학년
 3. 의과대학 5, 6학년
- ②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동수를 득표한 후보에 한하여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50조(공고)

개표 결과 특정 선본이 당선될 경우 선관위는 개표 완료 24시간 이내에 당선 공고를 해야한다. 당선 공고 24시간 후 당선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제51조(이의 제기)

- ① 선거 관련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문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제소할 수 있다.
- ②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고를 취하한다.

제52조(당선 확정 공고)

당선 공고 이후 24시간의 이의제기 접수기간을 갖는다.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당선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위 조항은 악의적으로 당선을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제9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1절 재투표

제53조(재투표)

- ① 정규 투표 경선 시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의 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해당 후보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정규 투표 단선 시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해당 후보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재투표가 결정된 경우 이전 투표 결과는 무효화되며, 선관위는 재투표 실시 사실 및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 ④ 재투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재투표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절 재선거

제54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선거 무산이 선언된 경우
 2.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등록 말소된 경우
- ② 재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 선거는 재선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
 1. 연장투표 진행 후, 투표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는 후보자를 자동 탈락으로 간주한다.
 2.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재선거는 정규 투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0장 보궐선거

제55조(보궐선거)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음 학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재선거가 선거 무산이 선언된 경우
 2. 등록된 후보가 없는 경우
 3. 재선거의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등록 말소된 경우
- ② 보궐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 선거는 보궐선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

제11장 징계

제1절 징계의 종류

제56조(정의)

징계는 본교 중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며, 본 세칙의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후보자 등록 기간 시 발생한 위반사항 또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57조(구성)

- ① 선분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후보자 박탈로 이루어지며,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4회 누적 시 후보자 박탈에 해당한다.
- ② 후보자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단, 당해 연도 학생회 임기 기준이다.)

제58조(시행)

- ① 중선관위는 징계 사항을 해당 선본에게 즉시 서면 통보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징계를 받은 선본은 반드시 사과문을 작성해야 한다. 공개 사과문은 24시간 내에 협의된 교내, 본교 홈페이지 이야기 광장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다.
- ③ 징계를 받은 후 해당 선본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의 제기)

중선관위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2절 징계 사항

제60조(주의)

- ① 중선관위가 규정하지 않은 시간에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중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및 사전 협의된 사항에 위반되는 장소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
- ③ 중선관위에서 제작 및 제공을 허가한 선전물이 아니거나 규정한 선거 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선거 운동 및 홍보 행위

제61조(경고)

- ① 본교 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 운동 행위
- ② 이전의 징계 조치에서 시정 사항을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③ 중선관위나 타 선본원에게 협박,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④ 중선관위와 각 선본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금지된 방법의 선거 운동 행위
 1. 사전 협의에서 정해진 선거 운동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전 협의에서 금지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⑤ 타 선본의 선거 운동 방해 행위
 1. 타 선본원을 회유, 협박하는 행위
 2. 타 선본의 선거 상징물 또는 대자보, 출사표, 온라인 홍보물 등의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 ⑥ 타 선본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 기본 선거 질서를 해치는 각종 폐습 행위
- ⑦ 선전물 부분의 위반 시 동일조항일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제62조(후보자 박탈 사유)

- ①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
- ② 중선관위나 타 선본원을 폭행하거나 납치 및 감금하는 행위
 1.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 및 정신의 온전성을 해하는 행위로, 가벼운 몸싸움도 폭행으로 간주
 2. 상대방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시간적 제약을 가하는 행위 역시 납치 및 감금으로 간주 (이의 제기자는 이 행위에 대한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 ③ 중선관위 결정에 의하지 않고 투표 중 온라인 선거에 사용하는 서버를 해하는 등의 방해하는 행위

- ④ 후보 추천 문서를 조작 및 위조하는 행위 (본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경우 포함)

제63조(기타)

기타 이외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는 중선관위의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징계의 경중을 결정한다.

제3절 이의제기

제64조(이의제기권자)

- ① 징계사항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는 각 선본이 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후 결정된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개표 당시에는 선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후 결정된 창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이의제기의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 처리는 중선관위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중 2/3 이상의 의결로 처리한다.
- ③ 이의제기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선본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요구가 요청될 경우 중선관위는 즉각 재심의를 진행한다. (단, 재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없다.)

제12장 개정

제66조(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할 경우 중선관위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7조(결정)

이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선거 규약 이외의 사항은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선거지침의 제정)

기타 선거 전반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선거세부지침서를 만들 수 있다. 그 효력은 본 시행세칙과 동일하다.

제3조

재학생의 정의는 본교의 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조(효력의 소멸)

본 세칙은 개표 종료 72시간 후 효력이 소멸된다.

제5조(제정일 및 시행일)

본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 제정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